

충남대학교 대학원 수의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3. 2.22]

1차 개정 2014. 11. 4.

2차 개정 2017. 3.28.

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수의학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박사 및 석·박사통합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논문제출자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수의학과에서 추가로 정한 별도의 학과장이 설강한 ‘수의학세미나’ 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수의학세미나 1,2,3,4」 과목은 모든 전공에서 주전공으로 인정한다.

제4조(논문제출자격시험) ①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격시험은 전공에 대하여 실시하고 자격시험의 과목은 석사학위과정 3과목 이상, 박사학위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은 4과목 이상으로 한다.

③ 자격시험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 및 전문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④ 출제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임교수 중에서 2인 이상을 위촉하며, 채점위원은 원칙적으로 출제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따로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전공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불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⑥ 시험의 결과는 5년간 학과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어능력 기준)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2014.11.4.)

1. TEPS 500점 이상
2. TOEIC 600점 이상
3. TOEFL(CBT) 175점 이상

4. TOEFL(iBT) 63점 이상
5. TOEFL(PBT) 503점 이상
6.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센터 모의TOEIC 600점 이상
7. IELTS 5.5점 이상 (신설 2017. 3.28.)

②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2014.11.4.)

제6조(논문지도위원회) ①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둔다.

②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학생의 지도교수는 3인 이상의 위원을 학과 주임교수에게 추천하고, 학과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 1학기 이전에 논문연구계획을 공개 발표하여야 하며,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이를 심사한다.

제7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 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충족하고, [별지 제1호 서식] 학술지게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학술지게재 의무 조건
1. 2005학년도 후기 ~ 2014학년도 입학자	박사학위과정은 국제저명학술지(SCI급)에 1편 이상 또는 국내전문학술지(등재후보) 이상의 학술지에 2편 이상 게재하여야 하며, 석·박사통합과정은 인용지수 2.0 이상의 국제저명학술지(SCI급)에 게재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2015학년도 ~ 2016학년도 입학자	석사학위과정은 국내전문학술지(등재)급 이상 학술지 1편,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SCI(E) 학술지 2편 또는 SCI(E) 학술지의 인용지수의 합이 5.0 이상의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	석사학위과정은 국내전문학술지(등재)급 이상 학술지 1편 또는 국제·국내 학술대회에서 1건 이상 발표,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SCI(E) 학술지 2편 또는 SCI(E) 학술지의 인용지수의 합이 5.0 이상의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학술지게재 의무 조건은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지도교수가 반드시 공저자인 논문으로써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학위청구논문제출자가 공동 주저자 또는 공동 교신저자인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동일 논문에 대하여 우리 학과 소속 대학원생 2인 이상이 공동 주저자 또는 공동 교신저자로 참여한 경우 그 중 1명에 대하여만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2.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또는 게재확정(accepted)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해당 학위과정에서의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8조(시행세칙의 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수의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단, 상기 제6조는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제7조는 2005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2014. 11. 4.)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 외국어능력기준은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3. 28.)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 제1항 제7호 및 제7조 제1항은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학술지게재 확인서

[수의학과 석·박사학위 취득예정자의 논문발표 심의자료]

작성일: 20년 월 일

지도교수: (인)

작성자: (인)

1. 취득예정자의 인적사항

성명		박사과정기간	20 . . . ~ 200 . . . (년 개월)		
청구논문제목					
지도교수		전공분야			
현직장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2. 발표논문의 실적요약

구분	심사대상논문(건)
국제저명학술지(SCI급)	
국내전문학술지(등재후보 이상)	

3. 논문발표실적

구분		논문명	저널명	권/페이지	저자명(순서)
논문게재	국제				
	국내				
게재예정(in press)논문	국제				
	국내				
기타사항					

- 점수와 관련도는 지도교수가 확인하고 기타사항의 내용은 점수를 기재하지 않음.

붙임 : 1. 발표논문 별쇄본

2. JCR 학문분야별 SCI 논문 여부 및 Impact Factor 확인서